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고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금액	
고지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